

2022. 4. 29. ~ 5. 3.
- 5일간 -

제34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 성 군 의 회

처리결과

의안 번호	의안명	의결 일자	심사 결과
2256	장성군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3.	원안가결
2257	장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원안가결
2258	장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원안가결
2259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원안가결
2260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3.	원안가결
2261	장성군의회 포상규칙 폐지규칙안	5. 3.	원안가결
2262	장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3.	원안가결
2263	장성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3.	원안가결
2264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원안가결

주요내용

1. 장성군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출자 : 고재진 부의장

○ 제출일자 : 2022. 4. 15.

○ 제안이유

- 민원인의 갑질·모욕·폭언·폭행 등 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의장의 책무(안 제1조 ~ 제4조)
- 신고의무,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내용(안 제5조 ~ 제7조)
- 안전시설 확충 및 재정지원 사항(안 제8조 ~ 9조)
- 지원 신청 절차 및 지원결정(안 제10조 ~ 제11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장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이태신의원

○ 제출일자 : 2022. 4. 15.

○ 제안이유

- 후생복지사업 중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직원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함

○ 주요내용

- 후생복지사업의 세부사업 신설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 (개정) 상조용품 지원 → 장례비 지원
 - (신설) 직원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심민섭의원

○ 제출일자 : 2022. 4. 15.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022. 1. 13.)에 따라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방의회 운영을 자율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임시회 소집 정족수 규정(안 제3조제3항)

- 군수나 재적의원의 1/3 이상 요구시 15일 이내에 임시회 소집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오원석의원

○ 제출일자 : 2022. 4. 15.

○ 제안이유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일부개정 (2022. 01. 05.)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법률 제18191호, 2022. 05. 19.시행)에 따라 관

련 조문을 정비하고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유사·중복 규정 삭제(안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 제10조, 제16조)
- 산하기관 범위 수정(안 제10조의3제3호)
-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설날·추석 기간에 한해 두 배로 상향(안 제11조제3항제1호 별표 1)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출자 : 김미순의원

○ 제출일자 : 2022. 4. 15.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하부조직에 관한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의회사무과 하부조직에 관한 조항 정비 (안 제5조제1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장성군의회 포상규칙 폐지규칙안

○ 제출자 : 차상현의원

○ 제출일자 : 2022. 4. 15.

○ 제안이유

- 「장성군의회 포상 조례」 제정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장성군의회 포상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장성군의회 포상 규칙」을 폐지함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장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출일자 : 2022. 4. 22.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22.1.13.시행)에 따라 설치 근거 마련됨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7068(2021.11.24.)호 및 도 정책기획관-13067(2021.11.30.)호

○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위원회의 직원(안 제2조~제5조)
-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수당 등(안 제6조~제7조)
-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운영세칙 등(안 제8조~제9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8. 장성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출일자 : 2022. 4. 22.

○ 제안이유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장성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지원기준 (안 제4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군에 권고한 사항
-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군의 책임을 입증받은 민간인 희생자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사단법인 한국전쟁 유족회 등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사항

- 지원사업 등 (안 제5조)

-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합동위령제, 각종 위령시설 조성 및 보수 지원 사업 등)
-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수집 및 간행물 발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9.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출일자 : 2022. 4. 22.

○ 제안이유

- 장성군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의 용도에 대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제4조제2항)기금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삭제)

○ 의결결과 : 원안가결